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동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6
----------	------

발의연월일 : 2021. 11. 22.

발의의원 : 신동운 의원, 이대곤 의원

1.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조례 근거 개정

2.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인용 조항 개정
 - 제1조 : 「지방자치법」 제41조 → 제49조
 - 제3조 : 「지방자치법」 제146조 → 제163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1조”를 “제49조”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제146조”를 “제163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 등에게 지급할 실비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제49조 ----- ----- ----- ----- ----- ---.
제3조(실비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	제3조(실비지급의 예외) ----- ----- ----- --. 1.~2. (현행과 같음) 3. ----- 제163조 ----- -----

□ 지방자치법(시행 2022.1.13.) (2021.1.12., 전부개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 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34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3조(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